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362호
- 다. 제출일자 : 2015. 3. 27.
- 라. 회부일자 : 2015. 4. 2.

2. 제안사유

- 대중교통 요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민안전 확보와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나.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분석하여 조정하는 시기는 시장이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하도록 함(안 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5. 2. 13 ~ 2015. 3. 4
 - 제출의견 : 반대(노동당 서울시당)
 - 2년마다 순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요소들로만 대중교통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2년마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임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

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시행시기를 동 조례 개정 이후에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하도록 하는 것임

나. 서울시 주요 요금의 적정 여부 조정 주기에 대한 검토

- 서울시 주요 요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¹⁾』에서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수료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교통요금의 경우에는 심의 이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요금 적정 여부에 대한 조정 주기를 명문화하고 있는 대상은 없음
- 다만,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요금 수준을 각각 조례²⁾에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라 요금 변경이 가능한 상황으로 2010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요금은 1회, 하수도요금은 3회에 걸쳐 요금이 인상된 바 있으며,
하수도요금의 경우 2012년 조례개정 당시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등 각 연도별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를 작성함에 따라 3년 연속 사용요금이 증가하였음³⁾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 경과

수도 요금 인상 현황		하수도 요금 인상 현황	
인상 일시	인상폭	인상 일시	인상폭
1999. 1.15	14.9%	2001. 1. 5	25.2%
		2003. 4.15	22.0%
2001. 1. 5	14.9%	2005. 5.19	35.0%
		2012. 1. 5	35.0%
2012. 1. 5	9.6%	2013.3월 납기분	20.0%
		2014.3월 납기분	15.0%

1)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7., 2016.5.19.>
 1. 교통요금(시내버스·마을버스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② 수도요금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별표 2의 수도요금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 중략 -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 후략 -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2] 하수도사용요금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주기에 대한 검토

- 과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요금인상 주기가 일정하지 않음에 따라 매년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었고, 2004년 7월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는 2007년 4월 및 2012년 2월에 한 번씩 단 2회에 걸쳐 요금인상이 있었음(붙임1 참조)
- 대중교통 요금 조정 주기가 상이함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요금 조정 시기가 불가인상, 운송원가보전을 등 요금조정에 대한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크게 좌우 받음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 조정시기가 필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운송기관 및 서울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토록 함으로써 요금 조정 요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논의를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면이 있음
- 다만, 서울시 다른 요금의 경우 요금 적정성에 대한 분석·조정 주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요금만 조정 주기를 정하고, 이에 대한 주기를 2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이 요금인상 기간을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요금인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⁴⁾를 통해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보조금 부담 지원 및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실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 이전에 대중교통 운송기관들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택시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⁵⁾」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있을 뿐 요금 조정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 바, 대중교통요금도 주기적으로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하되 조정 요인과 그 근거가 명확할 경우에만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감사원은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4.12월)”을 통해 서울시 준공영제의 경우 이윤 추가지급, 폐차매각대금·휴차료·사고처리비 등의 운송수입금 누락 등에 따라 연간 최소 343.5억원의 보조금이 버스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지원되었다고 지적함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원칙) 관할관청은 운임·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5.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절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붙임1】 대중교통 요금 조정 추이

구 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연도	요 금 (원)	인상액 (원)	구 분	요 금 (원)	인상액 (원)	구 분	요 금 (원)	인상액 (원)
버스준 공영제 시행전	'74. 8.15	30	-						
	'86.12.29	200	170						
	'90.12.31	250	50						
	'93. 2.10	300	50				'93. 6.10	200	-
	'94. 1.15	350	50						
	'95.11.20	400	50	'95. 3.20	320	-	'95. 9.11	250	50
				'95. 7.15	340	20			
				'96. 7. 1	400	60			
	'97. 7. 4	450	50	'97. 5.26	430	30			
	'99. 1.18	500	50	'98. 1.15	500	70	'98. 5	300	50
	'00. 9. 1	600	100	'00. 7. 1	600	100	'02. 3.22	350	50
'03. 3.10	700	100	'03. 3.10	700	100	'03. 5.24	450	100	
버스준 공영제 시행후	'04. 7. 1	800	100	'04. 7. 1	800	100	'04. 7. 1	500	50
	'07. 4. 1	900	100	'07. 4. 1	900	100	'07. 4. 1	600	100
	'12. 2.25	1,050	150	'12. 2.25	1,050	150	'12. 2.25	750	150
	'15. 6.27	1,250	200	'15. 6.27	1,200	150	'15. 6.27	900	150